

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

- ◆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재위탁 추진 보고
- ◆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

2018. 6.

행 정 국

1

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재위탁 추진 보고

- ◆ 서천연수원 수탁사와 협약기간이 만료('18.12.31)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

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

위탁현황

- 위 치 :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-87 서천연수원
- 시설규모 : 부지 97,684 m^2 (연면적 18,925 m^2 지하2층/지상4층)
- 수탁사 : (주)HTC(대표 : 김곤중,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36)
- 수탁기간 : '16. 7. 1 ~ '18. 12.31.(2년6개월)
- 위탁예산 : 연2,018백만원(168,179천원/월)

〈 그 간의 위탁 경과 〉

- ▶ 최초위탁(1차) : '07.6.1~'10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, 공개모집
 - ▶ 재 위 탁(2차) : '10.6.1~'13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, 공개모집
 - ▶ 재 위 탁(3차) : '13.6.1~'16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, 공개모집
 - ▶ 재 위 탁(4차) : '16.7.1~'18.12.31 (수탁업체 : (주)HTC), 공개모집
- ※ 4회차 서천연수원 시의회 동의안 가결 [의안번호 09-01005('16.3.9)]

재위탁 추진계획

- 위탁사무 :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2019.1.1. ~ 2021.12.31.(3년)
- 참가자격 :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 또는
그 자로부터 숙박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
- 위탁예산 : 연간 2,352백만원(196,000천원/월)
 - 모집참가업체 제안가격,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
- 재위탁 필요성
 -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·관리토록 함으로써,
 -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
 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

추진일정

- 수탁기관 공개모집 '18. 8월
-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'18.11월
-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'18.12월

- ◆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직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힐링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('18.12.31.)되어 재위탁 절차 추진

□ 추진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□ 위탁현황

- 시설현황 : 본관 지하2층(83.63 m^2), 서소문청사 1동 1층(62.86 m^2)
- 위탁기간 : '16.3.1 ~ '18.12.31 (2년 10개월)
- 수탁사 : (주)다인 (대표 : 송민경,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)
- 위탁예산 : 연간 396백만원
- 주요기능 :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체계적 관리
 - 개인상담, 주제별 집단상담 (생애주기별, 팀워크증진 등), 스트레스 관리 특강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

〈 그 간의 위탁 경과 〉

- ▶ 최초위탁(1차) : '13.5.7~'16. 2.29 (수탁업체 : (주)다인), 공개모집
 - ※ 최초 서울시 직원 직무스트레스 시의회 동의안 가결 [의안번호 08-01102('12.12.11)]
- ▶ 재 위 탁(2차) : '16.3.1~'18.12.31 (수탁업체 : (주)다인), 공개모집

재위탁 추진계획

-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심포 운영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2019. 1. 1 ~ 2021. 12. 31 (3년)
- 참가자격 : EAP(근로자 지원프로그램)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또는 단체·사업자
- 위탁예산 : 연간 396백만원(계약심사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)
- 재위탁 필요성
 - 전문업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하여 조직 수요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고,
 -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내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,
 -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함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
 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자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

추진일정

- 수탁기관 공개모집 '18. 9월
-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'18.10월
-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'18.11월